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5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전재수·전용기·송옥주

고용진ㆍ허 영ㆍ이병훈

이장섭 · 김철민 · 고영인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계획의 승인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	
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